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자료

'17. 10. 20(금)

안 건

1.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계획(안) ····· 1

2. 장애인서비스 현황 및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 13

보건복지부

1.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 추진배경

○ 정부는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

○ **복지부 장관은 광화문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8.25일), 5년간의 농성을 풀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합의**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 및 공감대** 형성 필요

2 협의체 구성

○ **(목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관련한 **민·관 간 의견수렴 및 협의**

○ **(구성) 장애계(4명), 전문가(6명), 복지부(2명)의 12명**으로 구성

- **(장애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 **(전문가)** 대구대 조한진 교수,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 배재대 정지웅 교수, 전주대 최복천 교수, 보사연 황주희 연구원

-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정책과장

3 협의체 운영계획(안)

○ **(위원장 선임)** 1차 회의에서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 **(운영일정) '17.10월 이후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가급적 많은 위원들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요일은 금요일을 우선 고려하되, 직전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차기 회의날짜를 정함

○ **(논의안건) 1차 회의에서 위원들 의견을 수렴**, 향후 논의안건 및 논의일정 등 정리

* 【참고】 논의필요안건 의견수렴 결과

4 향후 일정

○ 2차 회의 개최(11월중)

○ 등급제 폐지 추진방안 논의('17.하~) 및 확정('18.상)

2. 장애인서비스 현황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경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 추진배경

○ 장애인서비스가 장애인의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등급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장애인이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 전달체계**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등급을 대신하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필요

*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2 장애인서비스 현황

○ **등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총 144개**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소관 서비스 및 각종 법령·규정에 근거를 둔 서비스 기준

① **일괄지원서비스**(65개) : 등급과 관계없이 **전체 등록장애인**에게 제공

- 서비스 성격을 기준으로 **할인감면**(18개), **자립**지원(7개), **소득**지원(7개), **의료**지원(4개), **생활**지원(6개), **이동**지원(1개), 기타(22개)로 분류 가능

② **차등지원서비스**(79개) :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게** 제공

- 서비스 성격을 기준으로 **자립**지원(23개), **할인감면**(16개), **소득**지원(11개), **생활**지원(7개), **의료**지원(5개), **이동**지원(5개), 기타(12개)로 분류 가능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을 위해 **타 부처 협의 진행 및 근거법령 개정*** 검토 중

*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 12개, 시행령 21개, 시행규칙 22개 등 총 55개 법령

<장애인복지서비스 분류표>

장애등급	주요 서비스 내용		
	할인감면(34)	자립지원(30)	소득지원(18)
1급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지원사업 등	장애인연금 등
2급			
3급	전기요금 할인, 국립공원입장료 면제 등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 평가 면제 등
4급			
5급	이동통신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장애인의료비 공제 등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여성장애인지원사업 등	장애수당 등
6급			장애아동양육수당, 장애검사비 지원 등

장애등급	주요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13)	의료지원(9)	이동지원(6)
1급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	의료분쟁 조정권개시 등	정보화방문 서비스 등
2급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 등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등	
3급			장애인자동차 운전교육지원 등
4급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 사랑의그린pc보급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보행상 장애 기준) 등
5급			
6급			

* 기타 34개 서비스(주로 각종 시설 운영 등)는 생략함

3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경과

○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운영 및 개편방향 논의('13.4~12월, 6차 회의)

*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 복지부, 공공기관 참석

○ **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14.1~8월) 및 장애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 운영('14.4~8월, 16차 회의)

○ 장애등급제 개편내용 및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장애계 등 설명·의견수렴** 실시('14.9~12월, 장애인단체 10회, 관계부처 2회, 지자체 2회)

○ **1차**('15.6~12월, 6개 시군구) **및 2차 시범사업**('16.6~11월, 10개 시군구) 실시

○ 장애등급 활용 **타 부처 사업 기준변경 및 법령개정 협의**('15년~)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조사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의원발의**

* 김승희의원 대표발의('16.10월), 김상희의원 대표발의('17.9월)

○ 종합판정도구 타당성 검증 및 읍면동을 활용한 전달체계 효과성 분석을 위한 **3차 시범사업 실시 중**('17.4~10월, 18개 시군구)

4 시범사업 개요

1 1차·2차 시범사업

○ **(1차 시범사업) 공단 중심 전달체계** 모형의 **서비스 연계 효과성** 검토('16.5~12월, 6개 시군구, 약 25백명)

- 서비스 욕구 2,614건에 대해 **서비스제공**(639건, 24.4%) 및 **정보제공**(1,884건, 72.1%), 서비스 연계를 통한 욕구해소 가능성 확인

○ **(2차 시범사업)** 시군구 역할을 강화한 **공단-시군구 협업모형 적용, 종합판정도구 모의적용**('16.5~12월, 6개 시군구, 4천명)

- **총 4,037명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조사** 수행, 이 중 **2,023명(50.1%)**에 공공 및 민간서비스 연계
- 다만, 공단 중심의 **별도 전달체계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활용** 필요성 제기

2 3차 시범사업

< 시범사업 개요 >

○ **(사업지역) 총 18개 시·군·구**(공단-시군구형 5개, 읍면동형 13개)

○ **(사업기간) '17. 4~10월**(6개월)

○ **(주요 점검사항) 공단-시군구 모형**과 **접근성 높은 읍면동** 모형을 비교·검토하여 **효과성과 소요인력 규모** 등 검토

-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등 서비스지원조사를 모의적용하여 판정도구의 타당성 검토 등 제반사항 점검

○ **(참여대상) 4,000명**을 목표로 **읍면동형**은 본사업 시 예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본인 신청** 및 타 기관 의뢰로 참여, **공단형**은 **부족인원을 추가** 발굴

○ **(종합판정 적용사업)**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등

* 신규서비스인 야간순회, 응급안전, 보행훈련 등 시범 제공

< 2차 시범사업 vs. 3차 시범사업(안) 비교 >

구분		2차 시범사업	3차 시범사업(안)
서비스 전달체계		공단-시군구 협업모형	읍면동-시군구 협업모형 공단-시군구 협업모형
종합판정	적용 범위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신규 서비스
	판정 도구	서비스지원조사	서비스지원조사 보완

< 전달체계 모형 >

○ **(목적) 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통합하면서도 **장애인 전달체계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 구축

○ **(개요) ①공단-시군구 모형*** 및 **②읍면동-시군구 모형 2가지로 시범사업** 수행하여 추가 업무량, 인력 배치 필요성 검토 및 서비스 연계 성과 비교

*공단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 가구 **방문상담, 종합판정조사, 서비스연계** 기능 수행

○ **(2차 시범사업과 차이점)** 추가된 **읍면동 모형**은 **지자체 역할 강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연계·지원 기능** 부여하고, **공단**은 **종합판정 조사 기능** 담당

- **(읍면동)**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통합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방문상담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 향상**

* 현행 고위험 복합위기가구보다 넓은 **중위험군 장애인**(독거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취약가구 등) 방문 상담

- **(시군구) 2차 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 서비스 지원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업무 부담이 높은 **읍면동 지원 기능 강화**

- **(공단)** 장애심사, 종합판정 조사 기능을 수행하며 **지자체 지원**

< 전달체계 모형 간 비교 >

구분		현행 전달체계	공단-시군구 모형 (2차 시범사업)	읍면동-시군구 모형 (3차 시범사업 추가)
읍면동	복지 행정팀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맞춤형 복지팀			○ 찾아가는 초기상담 ○ (1차) 서비스 연계
시군구		○ 공적 급여 결정	○ 공적 급여 결정 ○ (2차) 서비스 연계	○ 공적 급여 결정 ○ (2차) 서비스 연계 ○ 읍면동 초기상담 지원
공단		○ 장애등록 심사 ○ 서비스연계지원사업 (전국 20개 지사)	○ 장애등록 심사 ○ 종합판정 조사 ○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 찾아가는 초기상담 ○ (1차) 서비스 연계	○ 장애등록 심사 ○ 종합판정 조사

참고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

○ **등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총 144개**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소관 서비스 및 각종 법령·규정에 근거를 둔 서비스 기준

- 서비스 성격 기준으로 **할인감면**(34개), **자립**지원(30개), **소득**지원(18개), **생활**지원(13개), **의료**지원(9개), **이동**지원(6개), 기타(34개)로 분류 가능

① **일괄지원서비스**(65개) : 등급과 관계없이 **전체 등록장애인**에게 제공

- 서비스 성격을 기준으로 **할인감면**(18개), **자립**지원(7개), **소득**지원(7개), **생활**지원(6개), **의료**지원(4개), **이동**지원(1개), 기타(22개)로 분류 가능

② **차등지원서비스**(79개) :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게** 제공

- 서비스 성격을 기준으로 **자립**지원(23개), **할인감면**(16개), **소득**지원(11개), **생활**지원(7개), **의료**지원(5개), **이동**지원(5개), 기타(12개)로 분류 가능

< 장애인서비스 목록 >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현행기준
일괄지원	이동통신 요금할인	기본료및통화료35%할인 -차상위계층은가구당4인한도감면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10,500원	1~6급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기본이용료의 30% 할인	1~6급
	유선전화 요금할인	시내통화료 : 50% 할인/ 시외통화료 : 3만원 한도 50% 할인	1~6급
	TV 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록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50%할인(카드 신청)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101종) 및 재활병원 진료 용구 등	1~6급

	특허출원료/ 기술평가청구료 감면	특허출원시출원료,심사청구료1~3등록료,기술평가청구료면제/특허권·실용신안권또는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할인	1~6급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 감면(의수족, 휠체어 등)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점필,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특수제작된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키보드및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및골반보조기에한함)등
	소득세 인적 공제	인적공제(1인당 200만원)	1~6급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은 공제 한도없이 의료비 공제	1~6급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재산 추가공제	1~6급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증여세 면제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1~6급 등록장애인이직계존비속또는친족으로부터증여받은증여재산중신탁회사에신탁한재산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은 공제 한도없이 특수교육비 공제	1~6급
	공영주차장요금	장애인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장애인이운전하는차량또는장애인이승차한차량 (지역별로다름)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급 면제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 면제	1~6급 승용자동차,7~15인승승합차, 2.5톤이하화물차중1대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시도별 상이(각도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관례 조례에 의함)
	국공립공연 관람료할인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자체공연 관람료 50% 할인	1~6급 1~3급장애인과동행하는보호자1인
	공공시설 이용 요금면제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국·공립공원 장애인등록증제시시이용요금면제	1~6급
	특수학급보조 인력배치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인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만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훈련수당)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대여 사업과통합)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 장애인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및 출산비용지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기준 1백만원지원	1~6급 출산또는유산(4개월이상)한 여성장애인
	장애인 근로자 융자사업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1인당 1,000만원이내이며 장애인용 특수장비는 500만원 추가 융자 가능/ 직업재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1,000만원 이내	1~6급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차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융자 지원함. 1인당 5,000만원 이내 융자 가능(연리3%)/ 영업장소는 1인당 1억원 이내에 지원가능	1~6급 만20세이상
	취업알선 지원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1~6급 만15세이상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양육부담 경감	1~6급 만0세~만12세장애아동 종일(438천원)/방과후(219천원) 가구소득과무관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 양육부담 경감	1~6급 0세~만5세보육시설미이용 장애아동 0세~35개월(200천원)/36개월~취학전(100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급여증 받아야 함)	의료급여수급자(2종) 건강보험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성질환및18세미만장애인)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 대상 진단서 발급비용지원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일반장애 : 1만5천원	지적장애및자폐성장애:4만원 기타일반장애:1만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장애검사비 지원	소득에 따라 장애검사비 지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또는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재진단대상)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1~6급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문화바우처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이용권(가구당 연 5만원) 지급	1~6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및이에준하는문화소외계층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1~6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120%) (우선고려)장애유형,생활정도,자가유무에따라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지원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우선지원)저소득및중증장애인
	장애인 방송시청지원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함	시청각 장애인
	사랑의그린pc 보급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중고pc보급	1~6급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비용지원, 성년후견선임비용 지원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만 19세 이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파견,산후조리,자녀양육,가사활동지원	1~6급 여성장애인 (우선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언어발달지원	-시·청각장애부모의자녀에게필요한언어발달지원서비스제공 -언어발달진단서비스및심리상담서비스	부모의 장애가 시각,청각,언어,뇌병변,지적,자폐성등록장애인

		-언어치료,청능치료등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놀이지도,수화지도등	만12세미만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장애아동 대상 인지·작업등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지원 매월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소득별차등지원)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재가장애인에 방문재활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 제공(1~3급중증장애인으로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자등) ①장애인재활사업,②장애인사회참여사업,③2차장애발생예방사업,④지역사회재활협의체구축	등록장애인 1~3급중증장애인으로 지속적으로재활이 필요한 자 재가장애인 중 1차장애 예방(고혈압,당뇨,심질환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자 고령,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 재활관리 필요한 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시설,재가청각장애아동 만19세미만,저소득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사용허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1~6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배우자,배우자의직계존비속,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산모등건강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	서비스별 소득 및 연령 기준 상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발달장애인 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 (소득기준초과가구는실비참여) <제외대상: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휴식지원프로그램이용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6개 기관 내외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임	발달장애인부모 (시범사업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등록장애인
	장애인	장애의진단및치료	등록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보장구제작및수리 장애인의료재활상담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등의 판매활동과 유통 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마케팅 지원	시설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운영기준,생산품선정및관리,판매기술의확보,판매수입금처리및범위 *2017장애인복지사업안내3권참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민원업무대행,직장출·퇴근,장보기,이사짐운반,가사돕기,취업안내등 이용요금 : 실비/사업주체 : 시각장애인연합회	등록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출장수화통역(관공서·법률관련기관방문,의료기관진료등의경우에수화통역필요시출장통역실시) 일반인에대한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대한고충상담	청각, 언어장애인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등록장애인 및 가족
	주간 보호시설 운영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등록장애인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장애인의체력증진및신체기능회복활동지원, 이용료는재가장애인,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시설별산정이용료부담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중앙회및시도협회에지원센터를두어장애인과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및상담,장애인IT대회,인권·교육지원사업,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사회적,경제적자원제공)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에재가복지봉사센터를부설하여운영-재가장애인을방문,상담,의료·교육재활,직업재활등의서비스제공	등록장애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에대한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자기권리주장활동및사회참여활동지원 지적장애인부모및종사자교육 지적장애인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보급 등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편의시설설치홍보및안내 편의시설실태조사지원 시설주관기관에의견제시등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시각보조시설의제작과설치에관한기술지원및상담 시각보조시설설치실태조사 시각보조시설에대한인식개선,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설치관련자문·기술적지원 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참여 편의시설에대한인식개선,설치및이용방법홍보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시·도협회및시·군·구지회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3급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특수교육지원 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평가, 순회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구직장애인이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만 15세 이상
	무료법률구조 제도 실시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1~6급
	장애인 복지시설치과 유니트지원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차등 지원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감면	장애인에 대한 국내여객공항이용료 50%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1급~3급)의 동반보호자 1인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3급이상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1~3급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경감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50% 감경	1~3급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전체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가구1주택 적용의 예외사항 (취득세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면제('18.12.31까지)하며,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	1~3급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의 취득세·자동차세 제원, 차량기준 있음	1~3급(법령상), 시각4급(조례상)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면제	전체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할인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할인	1~3급 : 검사 수수료 50% 할인 4~6급 : 검사 수수료 30%

			할인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장애인 도시가스요금경감(장애인 월평균 12,400원 요금경감)	1~3급
	전기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20%(월 8천원 한도)	1~3급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지원	장애인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 지원(평균 월 5천원)	1~3급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철도(KTX 등) : 1~3급 보호자 1인 포함 50% 할인, 4~6급 30% 할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인 세대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를 경감	1~2등급 장애인(30% 경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	1~2급 : 30% 감면 3~4급 : 20% 감면 5~6급 : 10% 감면
	장애인 구강보건진료비 급여지원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방문 장애인에게 진료비 지원(감면)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모(중증장애인은 비급여의 30%, 경증장애인에 해당하면 비급여의 10%,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은 비급여의 50%를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뇌병변 1~6급 / 지체1~3급 / 뇌전증 2~4급 / 지적 1~3급 / 정신 1~3급 / 자폐 1~3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예외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않음	3급이상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훈련자에 대한 훈련수당,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훈련지도원 수당)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에게 직장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인턴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및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출퇴근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중증장애인 : 1,500만원 한도 지원 -경증장애인 : 1,000만원 한도 지원
	편의시설 등 설치구입비용	장애인고용시설(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	(지원대상 사업장의 요건 중 중증장애인 고용규정 포함)	(1~2급, 특정유형 3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지원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기준인원(별표) 이상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구비 4.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장애인 의무고용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17년 2.9% → '19년 3.1%)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미달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의 부담금 징수(10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경증장애인 차등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의무고용률(2.9%)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의 장려금 지원(2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경증장애인 차등 지원, 성별 차등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장애대학생에게 학습 편의 제공(이동편의, 교수·학습지원(대필 등), 수화통역, 속기지원 서비스)	1~3급(원칙) 심사등을거쳐필요성이큰경우는 경증(4~6급)또는기준외학생 포함가능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키보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등) 구입비용의 80% (일부는 90%)를 지원하는 사업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우선 저소득층우선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점포(전세보증금)지원 사업(저소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게 1억3천한도 내에서 영업점포 지원)	1~2급,특정유형3급 최저생계비기준200%이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	1~2급에 해당하는 시각, 지체, 청각, 신장, 뇌전증, 간, 안면, 장루. 요루장애

			인 (*기타요건 생략)
	장애인 일자리 지원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 제공	1순위:신규참여중증(1~3급)장애인 2순위:중증(1~3급)장애인,여성장애인,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시험대체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2~3등급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청각장애인 2~3급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돕는 사업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지체장애(1~3급/4~6급/하지지체), 뇌병변장애(1~3급/ 4~6급) 시각장애(1~2급 및 3급 일부/3~6급), 청각장애(2~6급)
	보조공학기기 지원(공무원)	장애인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기 또는 장비를 무상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 장애인(장애유형 및 업무특성에 따라 지원)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예비후보자 범위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청각, 언어장애 : 모든 등급 그 외 유형: 1~3급 장애인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지정에 따른 연금 및 수당 지급	경기, 훈련, 지도중의 사고를 원인으로 1~2등급 장애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유족에 대한 수급자격 부여	2급이상 + 3급 시각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자녀 지정취업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한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1~2급, 특정유형 3급)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및 2급인 사람이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생활능력/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등록 신청 시 신체검사 생략	1~2급

	5·18민주 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유가족의 요건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생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가족으로 인정	1급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	가족구성원이 18세 미만, 65세 이상, 4급 이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 취약가구로 분류하여 지원
	근로능력평가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없는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법상 중증 장애인(지침상 4급까지 인정) 18세 이상~64세 이하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자격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 자격요건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 장애인 (지침상 4급까지)
	장애인연금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2급, 3급 중복장애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3~6급(3급 중복장애인 제외) 만 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전체(장애인연금 기준으로 차등지급) 중증: 1~2급, 3급 중복 경증: 3~6급 만 18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배점표를 통한 총점순(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아가 있는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1~3급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 부담 경감	1~3급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보조기구 무료교부(지자체) -욕창방지용품/자세보조용품/보행보조용품 (2-120만원 상당)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등 : 1~3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등 : 시각 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등 : 청각 장애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등 : 뇌병변, 근육병 등 1~3급 지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1~2급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1~3급
	장애인의 전기사용상 응급조치지원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1~3급
	의사 및 치과의사 의약품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 조제 가능(의약분업 예외)	1~2급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1~2급 뇌병변·지체,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척수·뇌병변
	예방접종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발생 시 등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	1급 100/100 ~ 6급 25/100 등급별 차등보상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사망, 장애발생)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1급
	산소치료 요양비 대상여부 검사 면제	일정등급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동맥혈가스 검사(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1~2급 호흡기장애
	장애인 자동차 운전교육 지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 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1~3급
	정보화 방문 교육서비스	중증장애인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1~2급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인에게 표지발급(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등)	장애유형별 1~5급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 위반 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 등 배려	장애유형별 1~5급
	특별교통수단 운행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원	(확보기준) 1~2급 200명당 1대 (이용기준) 1~2급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및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1~2급 우선지원
	어린이집 우선	일정등급 이상 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1~2급,

	입소 지원	우선 지원	3급 중복 지적·자폐성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장애부모 가정에 '찾아가는 양육서비스' 우선 제공	1~2급, 3급 중복 지적·자폐성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1~3급
	북한이탈 주민 취업 보호기간 연장	일정자격 장애인의 경우, 취업보호기간 3년에 추가로 1년 연장	1~5급
	점자형 선거공보작성 제공	후보자는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1~4급 시각장애인
	점자형 주민소환투표 공보작성제공	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의 수와 점자인쇄시설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 이 조에서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1~4급 시각장애인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제공	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수와 점자인쇄시설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 시각장애투표인이 있는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1~4급 시각장애인
	장애인 징병검사(병역) 면제	일정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은 징병검사 없이 병역면제 등 처분	1~3급 검사면제, 4~6급 일부면제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징병검사 유예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시 징병검사 유예	1~2급
	징병검사 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징병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일부 장애유형 및 등급 신체검사 면제	1~3급 신체장애, 1~2급 정신장애 (지적·자폐·정신)
	중증장애인 병역면제, 제2국민역 처분	중증장애인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민방위) 판정	1~2급 면제, 3급 제2국민역